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회 의 명	영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2026. 9. 16.(수) 10:00 ~ 11:10		
장 소	구청 10층 대회의실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10명	9명	1명
안건명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회의 공개 여부의 건 3.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4. 월정수당 결정의 건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허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4년간의 영종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 영종구 통리장연합회 신승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 영종구 새마을부녀회 하재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전 Ge Aviation 부장 손정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 영종구 자율방범대 박영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지사 영종구지구 협의회 임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영종구 주민자치회 유상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공항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김형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민주평화통일 영종협의회 김서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물류통상학부 부교수 권재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구청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	--

사회자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수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전달 및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후 퇴장) 오늘 회의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4년간의 영종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배부해드린 선서문으로 별도의 선서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성원 보고, 위원장 선출, 의정비 관련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재적위원 10분 중 총 9분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연장자이신 저희 ‘라’ 위원님께서 맡아주시려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없음) 네 그러면 ‘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시위원장	영종구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공·에너지 사업, 바이오산업,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종구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행정은 구청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주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시위원장	저는 임시위원장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이신 ‘라’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 다수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그러시면 임시위원장이신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2026년도 영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렇다면 본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분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다보니 진행 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이 '27년부터 '30년까지 구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토록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위원	공개할 안할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자	회의 중 일반인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방청하는 것이고,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가 원칙입니다. 지금 회의를 다른 일반인 분들에게 공개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3 이상 찬성하게 되면 공개를 안해도 됩니다
다 위원	공개의 방식이 직접 여기 와서 대면으로 관찰하신다는 건가요? 온라인이나 비디오 테이프로 공개하는 건 아니고?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나 비디오테이프로 공개하는 건 아니고 직접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 겁니다.
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부터 공개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자	그렇죠. 다음번 회의 개최 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앉아서 방청하시는 거죠.
위원장	제 생각에는 공개를 하나 안하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 회의 자체가 원래 공개적인 회의입니다.

위원장	물론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 내가 아닌 5~6% 인상이 되면 방청객들의 질문과 관심이 좀 많아질 수는 있으니 비공개가 편할 수도 있지만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회의를 공개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손을 든 후) 출석위원의 2/3인 6분이 공개를 찬성하시므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 위원	그런데 이 회의가 1년에 몇 번씩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자	오늘 회의로 의정비가 결정되면 한번으로 끝납니다.
가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으로 끝이 난다면 내년 회의를 공개를 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결정될 월정수당 인상률이 3.5%를 넘어선다면 주민의견 수렴절차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차로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차 회의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자료에 대한 기획예산 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정비 심의에 앞서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3쪽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비 구성 및 결정사항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되며, 이 중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늘 위원회에서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범위를 심의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의정활동비란 의정 자료를 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월 150만원 이하로 결정되며, 영종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0만원으로 시행령 기준 최대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결 삭감이 가능하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월정수당은 2026년도 2,247,480원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을 결정합니다. 2027년 이후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월정 수당 결정 시 주요 객관적 지표는 첫 번째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로 2022년 대비 인구는 15.3%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로 2026년 기준 36.24%, 영종구 기준 48.50%입니다. 세 번째는 2026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회기 일수가 연간 90일 안팎이고 조례안 발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군구별 의회 의정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총액은 전체 군·구 평균 수준입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 사항은 서면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기획예산실장	다음은 8쪽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입니다. 월정수당을 약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를 초과하여 인상 결정 시에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쪽과 10쪽은 주민 의견 수렴의 종료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질의 응답, 15쪽은 관련 법령, 19쪽부터는 소송 관련 자료, 27쪽은 영종구 의회 의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심의 과정 중에 질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동결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자료 연구비가 120만원이고 보조활동비가 30만원으로 최대치인 150만원이며, 지금 현재도 영종구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 금액은 다른 구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자	아닙니다. 7페이지 중구 의정활동비를 보시면 각 구별 의정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아 의정활동비 평균은 137만원이군요.
사회자	참고로 2024년도에 의정 활동비가 20년만에 올랐습니다.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법정 한도가 올라가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저희 구에서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확인해보니 영종구가 낮은 쪽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쪽이네요 그렇다고 이걸 깎는 것보다는 동결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위원	네 고려사항에 적어주신 걸 보면 구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네 재정 능력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50만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게 되면 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를 할 경우 오히려 현재 지급 수준에 대하여 주민 정서상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만큼 지급해 온 만큼 동결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가 위원	자료 중 재정 현황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재정 규모가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는 지방교부세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포함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전체 예산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하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지표를 감안하여 의정활동비를 정할 수 있으며, 저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총액은 인천시 11개 군구 중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또한, 의원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한다면 강화, 옹진, 동구 다음으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재정자립도를 보면 48.50%로 조금 양호해보이는데...
기획예산실장	인천시 중에선 제일 높습니다.
위원장	근데 7월 1일 영종구 출범 당시 대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재정 자립도가 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총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내년 재정 규모가 아마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5천억원이라는 규모는 10개 군 중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50만원이 인천 시군구 평균에 비해 많긴 하지만 우리 구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지금 정해진 의정활동비는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정 사항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027년도 월정수당, 두 번째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자	27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이내에 결정을 하시든지 그것보다 더 높게 인상 또는 삭감을 할 수 있고, 28년도부터 30년도까지는 향후 나오는 공무원 보수 요율 안에서 그만큼 증액하거나 아니면 동결하겠다는 아니면 그 반절 수준만 인상하겠다는 것을 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28년도부터 30년도까지는 아직 공무원 보수 인상 요율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2.2%라고 하면 동결할지 그것보다 줄일지 그것보다 높일지를 토론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28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만 정해야하며, 동결하게 되면 0%가 오르는 셈이 됩니다.
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아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면 103만 5천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결정된 금액에서 다시 2028년부터 공무원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공무원 인상률에 대해 우리가 그 중 50%를 적용할지 90%를 적용할지를 이 자리에서 정하는 건가요?
사회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위원	그렇다면 4년치 월정 수당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데 27년도 월정수당 결정 시 4가지 안이 있는데 동결, 삭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보수 인상률 범위 초과하여, 이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삭감 시 그 범위도 결정해야 되나요?
사회자	네 만약에 10%를 삭감하신다고 하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몇%의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가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상한과 삭감의 범위까지만인가요?
사회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8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삭감은 없고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야 하나요?

사회자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3%정도 인상된다고 했을 때 3%의 인상분의 60%나 70%정도를 결정한다고 하면 2.4~2.7%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원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서류만으로 보기에는 다들 궁금하실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타 군구의 경우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 곳도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저희는 법적으로 최대치이며, 타 구의 경우는 거의 150만원이고 100만원이었던 곳은 140만원으로 올리는 곳이 좀 있습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맞추는 상태구요. 지금 동결된 곳은 미추홀구이며, 점단구가 월정수당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아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자치단체들은 거의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27년은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하고 28년 이후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정리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사실 공무원 인상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상률은 아니지 않나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의원님들의 월급처럼 산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의원님들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의 경우 월정수당을 공무원의 국장급, 과장급 급여로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세웠고 회의 자료에 금지사항에도 해당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에 월정수당 결정 금지 사항의 경우 특정 직급 공무원 보수라든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3.5%를 맞추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할 경우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하고 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또 깎으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활동비를 왜 깎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영종구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행정 구역 면적이 넓긴 하지만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고 인천시 지자체 중 주민 수, 재정능력이 하위권인 점을 감안할 때 의회에서 10%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아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 영종구 재정자립도는 48.6%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 규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정수당 순위가 영종구는 7위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7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월정수당 순위는 7위정도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를 많이 받고 총액 전체 순위를 보면 11개 군구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위원	그래서 2027년도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7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연도 뿐 아니라 앞으로 8년, 30년 후 월정수당 금액 기준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라는 기준을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이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이것보다 적을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과하면 구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위원	27쪽을 보시면 영종구 의회 의견인데 광역시 내 자치구 평균 월정수당보다 400만원 가량 낮기 때문에 10%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연구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시지 않을까 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 위원	영종구는 땅은 넓지만 미개발 지역인 곳이 많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수당을 많이 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고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주민분들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영종구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우리 영종구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 재정이 많지 않은 점, 그 다음에 미개발 지역이 아직 많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위원	제가 구의회 의견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월정수당 결정요소들을 보면 의원 1인당 주민 수의 경우에도 영종구의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는 약 2만명 정도인데 검단구는 4만 4천명, 연수구는 3만 1500명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 위원	그리고 관할 지역이 광대하다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 의원분들께서 각각 본인들의 기반이 되는 장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영종구 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외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 여비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자료에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사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을 비전임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매력 하락 방지를 위하는 정도로만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결론은 공무원 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공청회 절차라든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이 될수도 있고..
아 위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비교하면 영종구 의정비 순위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영리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의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거나 자기 개인 사업도 가능하고

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무보수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의정비를 월급 개념이 아닌 활동 보조비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 의견을 마무리 짓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편적인 의견이 3.5% 즉,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정하기 전에 27년 따로, 28년~30년 한번에 결정을 할지 각각 매년 따로 해야 하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28년부터 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요율 안에서 정하시면 되고, 전부 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해는 동결 어느 해는 인상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각각 하셔도 되고 의견만 맞으시면 한꺼번에 의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그럼 년도별로 각각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년도 월정수당은 3.5% 인상에 대해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위원들 만장일치로 찬성) 그럼 27년도 월정수당은 3.5%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28년도 월정수당은 역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올 27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될텐데 그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다른 인상률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	그럼 2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라면 그걸 100%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네, 맞습니다.
아 위원	그럼 30년도까지 쪽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건가요?
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28년도 것만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1안에서 결정하신 금액은 이미 3.5%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3.5% 적용을 받는 것이고, 기존 금액에서 그 다음 28년도부터 30년까지 3년 차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계속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보수 인상률의 반만 적용하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걸 결정하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2028년도 월정수당을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적용하는 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위원장	2028년도 월정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9년도 월정수당 역시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2029년도 월정수당 역시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7명 찬성) 2029년도 월정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2030년도 똑같이 월정수당 금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으로 한다, 몇%만큼 한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2030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 7명 거수) 7분이신가요? 네 이것으로 27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하여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모든 심의안건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이 2030년도까지 우리 영종구가 잘 이겨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줄 믿으며,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	---